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전 은 화

*논문접수: 2020. 10. 13. *심사개시: 2020. 10. 25. *게재확정: 2020. 11. 10.

-〈 목 차 〉—

- Ⅰ. 서론
- II. WTO SPS 과려 분쟁 현황
 - 1. 개요
 - 2. SPS 관련 국가별 분쟁 현황
 - 3. SPS 협정 조항별 분쟁 현황
 - 4. SPS 분야별 분쟁 현황

- Ⅲ. 중국의 SPS 관련 분쟁사례 분석
 - 1. 중국 관련 전체 분쟁사례(제소, 피소)
 - 2.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DS392)
 - 3.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제한 조치(DS589)
- Ⅳ. 요약 및 시사점

Ⅰ. 서론

2001년 12월 11일 WTO 제143번째 회원 국으로 가입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 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제1위의 무 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수출은 2001년 2,661억 달러에서 2019년 2조 4,990 억 달러로 연평균 14.2%씩 성장률을 보이 며 약 8.4배 증가하였고, 수입도 2001년 2,436억 달러에서 2019년 2조 771억 달러로 약 7.5배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농산물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¹⁾ 기준 2,78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 166.3억 달러에서 2018년 827.9억 달러로 연평균 10.2%씩 증

¹⁾ 중국의 전체 무역액은 2019년까지 제공되지만, 농식품 무역 데이터는 2018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출처: https://data.wto.org/ 최종 검색일: 2020. 8. 20.).

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2001년 210.3억 달 러에서 2018년 1,951.7억 달러로 연평균 15.5%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교 역 증가는 세계 농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농산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농산 물 교역 증대 추세는 불가피하게 향후 농 산물 무역과 크게 연관되는 SPS2)관련 무 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WTO 가입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2건의 SPS 관 련 소송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중 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미국의 수임제한 조치에 대한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 라종자(유채씨) 수입제한 관련하여 1건의 피소가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 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 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SPS협정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과의 SPS 분쟁 발생 대비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방향과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WTO SPS 분쟁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하여 우선 II 장에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국가별, 조항별, 그리고 주요 분야별로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발생한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례와 함께 중국의 SPS 관련 2건의 분쟁사례에 초점을두고, 제소배경, 소송쟁점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중국의 SPS 관련 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체제에서 발생한 SPS 분쟁사례를 전반적인 틀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중국의 최근 분쟁사례를 포함하여 중국관 런 SPS사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SPS 정책관 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 성을 가진다.

Ⅱ. WTO SPS 관련 분쟁 현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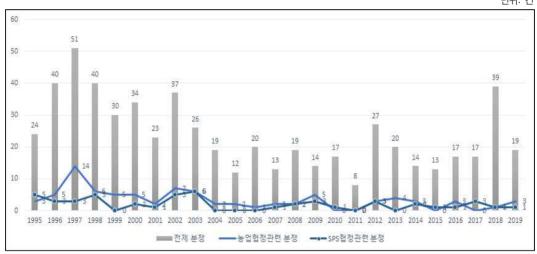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9

²⁾ 본 연구에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기본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을 의미하며, SPS협정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시행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위생검역조치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였다.

년까지 지난 25년간 총 593건의 무역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기구(DSB)³⁾에 회부 되었으며⁴⁾, 그중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관련 분쟁은 84건(전체 분쟁의 14%)이며, SPS협정(SPS Agreement) 관련 분쟁은 49건(전체 분쟁의 8%)이다. 즉 WTO 출범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23.7건의 분쟁이 발생 중이고 이 중 3.4건은 농업협정 관련 분쟁이고, 2건이 SPS 협정 관련 분쟁이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WTO 출범 이후 통상분쟁 발생 현황(1995~2019)

단위: 건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한편 지금까지 총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 중 21건은 농업협정 조항과도 동시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전체 분 쟁에서 SPS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비중은 8%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7년 이 후부터는 농업협정과 함께 연관되지 않고, 순수하게 WTO SPS 협정 위반 관련 분쟁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표 2-1 참 조).

³⁾ 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WTO 분쟁해결양해(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절차가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 발생한 통상분쟁 번호는 일반적으로 "Dispute"의 약자와 회부된 시간순서에 따라 DS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한다.

⁴⁾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표 2-1> WTO 출범 이후 SPS협정 관련 통상분쟁 발생 현황

단위: 거

				단취, 건
연도	SPS 협정 관련 분쟁	농업협정과 SPS 협정 동시 관련 분쟁	SPS 협정 관련 단독 분쟁	SPS 협정 관련 단독 분쟁 비중
1995	5	2	3	60%
1996	3	3	0	0%
1997	3	2	1	33%
1998	5	2	3	60%
1999	0	0	0	-
2000	2	1	1	50%
2001	1	1	0	0%
2002	5	3	2	40%
2003	6	3	3	50%
2004	0	0	0	-
2005	0	0	0	-
2006	0	0	0	-
2007	1	0	1	100%
2008	2	0	2	100%
2009	3	2	1	33%
2010	1	0	1	100%
2011	0	0	0	-
2012	3	0	3	100%
2013	0	0	0	-
2014	2	1	1	50%
2015	1	0	1	100%
2016	1	1	0	0%
2017	3	0	3	100%
2018	1	0	1	100%
2019	1	0	1	100%
합계	49	21	28	57%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2. SPS 관련 국가별 분쟁 현황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전체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제소한 회원국은 20개국이며, 제소를 당한 회원국은 16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제소를 가

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11건, 22%), 캐나다(10건, 20%), EU(5건, 10%), 아르헨티나(3건, 6%) 등의 순이다. 피소를 가장 많이당한 회원국은 EU(9건, 18%), 미국(9건, 18%), 한국(6건, 12%), 호주(6건, 12%), 그리고 인도(3건 6%) 등의 순이다(표 2-2 참조).

< ₹ 2-2>	WTO :	SPS	현젓	과려	국가별	분쟁	혀화(1995	~201	9)

	제소현황			피소현황			제3자로서 참여 현황			
순위	 국가	건수	비중	국가	건수	비중	국가	참여 건수	참여 비중	
1	 미국	11	22%	EU	9	18%	EU	17	35%	
2	캐나다	10	20%	미국	9	18%	중국	16	33%	
3	EU	5	10%	한국	6	12%	브라질	15	31%	
4	아르헨티나	3	6%	호주	6	12%	미국	14	29%	
5	멕시코	2	4%	인도	3	6%	대만	13	27%	
6	브라질	2	4%	러시아	2	4%	호주	13	27%	
7	필리핀	2	4%	멕시코	2	4%	노르웨이	12	24%	
8	헝가리	2	4%	인도네시아	2	4%	인도	12	24%	
9	뉴질랜드	1	2%	일본	2	4%	뉴질랜드	11	22%	
10	니카라과	1	2%	터키	2	4%	캐나다	9	18%	
11	러시아	1	2%	슬로바키아	1	2%	콜롬비아	8	16%	
12	베트남	1	2%	우크라이나	1	2%	과테말라	7	14%	
13	스위스	1	2%	이집트	1	2%	아르헨티나	7	14%	
14	에콰도르	1	2%	중국	1	2%	일본	7	14%	
15	우크라이나	1	2%	코스타리카	1	2%	칠레	7	14%	
16	인도	1	2%	크로아티아	1	2%	한국	7	14%	
17	인도네시아	1	2%	_	-	-	태국	6	12%	
18	일본	1	2%	_	-	-	멕시코	5	10%	
19	중국	1	2%	_	_	_	페루	5	10%	
20	태국	1	2%	-	-	-	엘살바도르	4	8%	
21	-	-	-	-	-	-	온두라스	4	8%	
22	-	-	-	_	-	_	파라과이	4	8%	
23	-	_	_	_	-	_	러시아	3	6%	
24	-	_	_	-	-	_	우루과이	3	6%	
25	-	-	-	-	-	-	베트남	2	4%	
26	-	-	-	-	-	_	에콰도르	2	4%	
27	-	-	-	-	_	_	터키	2	4%	
28	-	-	-	-	-	-	남아공	1	2%	
29	-	-	-	-	_	-	도미니카	1	2%	
30	-	-	-	-	_	-	아이슬란드	1	2%	
31	_	-	-	_	_	_	오만	1	2%	
32	-	-	-	-	-	_	짐바브웨	1	2%	
33	_	-	-	-	-	-	카타르	1	2%	
34	-	-	_	-	_	_	파나마	1	2%	
35	_	-	_	-	_	_	파키스탄	1	2%	
36	-	-	_	-	_	_	필리핀	1	2%	
37	_	-	_	-	_	_	헝가리	1	2%	
38	_	-	_	_	_	-	홍콩(중국)	1	2%	
전체	20개	49	100%	16개	49건	100%	38개	_	_	

주: 1)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복수 국가가 제소한 경우 개별 분쟁 건수로 산출했다. 가령, 2개국이 동일 분쟁 사안에 대해서 제소한 경우 2건의 분쟁으로 산출했다.

²⁾ 제3자로서 참여 현황은 해당 국가가 제3자로 4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 참여 비중이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한편 WTO 통상분쟁에서 제소국 혹은 피소국도 아니지만, 해당 분쟁에 대해 실 질적인 관심 있는 국가는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2019년까지 총 49건의 WTO SPS 협정이행 관련 분쟁에서 38개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SPS 관련 분쟁에 제3 자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는 EU(17건, 35%), 중국(16건, 33%)5), 브라질(15건, 31%), 미국(14건, 29%), 대만과 호주 (13건, 27%)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관련 1건의 피소를 당한 것으로나타나 전체 SPS협정 관련 분쟁에서 낮은건수(총 2건)와 비중(4.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SPS 통상 분쟁에서 상대국을 제소한 건수는 없는 반 면에 미국(3건), 캐나다(2건), 일본(1건)으 로부터 6건의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자로서는 총 7건의 SPS 분쟁에 참여하였다.

3. SPS 협정 조항별 분쟁 현황

SPS 통상분쟁은 일반적으로 WTO SPS 협정문의 주요 조문(항)별 이행과 관련한 제소국과 피소국간의 입장과 의견 차이에 서 비롯된다. 이에 SPS 통상분쟁을 SPS 협 정문의 주요 조문(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피소된 대부분 국가는 SPS 협정문 제2조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48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단, DS1330은 예외). 그다음으로는 제5조 "위험평가 및 동식물위생 보호의 적 정수준의 결정(47건)"과 관련하여 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DS1347) 및 DS2378) 예외). 이어서 제3조 "조화(27건)",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26건)", 제7 조 "투명성(25건)" 등의 순으로 제소를 가 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및 표 2-4 참조).

⁵⁾ 중국은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EU와 같이 17건의 SPS분쟁에 제3자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이다.

⁶⁾ DS133: 슬로바키아의 스위스산 유제품 수입과 가축 운송 관련 분쟁이다.

⁷⁾ DS134: EU의 인도산 쌀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분쟁이다.

⁸⁾ DS237: 터키의 에콰도르산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절차관련 분쟁이다.

<표 2-3> SPS 협정 조항별 통상분쟁 현황(1995~2019)⁹⁾

	조항	통상분쟁	건수
제1.1조	일반규정 (적용범위)	<u>DS447</u> , DS448	2
제2조		DS3, DS5, <u>DS18</u> , DS20, DS21, <u>DS26</u> , DS41, <u>DS48</u> , <u>DS76</u> , DS96, DS100, DS134, <u>DS135</u> , DS137, DS144, DS205, DS256, DS270, DS271, DS279,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84</u> , <u>DS386</u> , <u>DS406</u> , <u>DS430</u> , DS525	28
제2.1조		DS284, <u>DS367</u> , <u>DS392</u> , DS506, DS524	5
제2.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DS203,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DS389,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4
제2.3조		DS203, DS237,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4
제3조		<u>DS18</u> , <u>DS26</u> , <u>DS48</u> , DS96, DS100, <u>DS135</u> , DS137, DS144, DS203, DS205, DS270, DS271, DS279, <u>DS406</u> , DS525	15
제3.1조	· 조화	DS270, DS297,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DS506, DS524, DS589	12
제3.2조		<u>DS475</u> , DS506	2
제3.3조		DS287, <u>DS391</u> , <u>DS392</u> , <u>DS447</u> , DS448, <u>DS475</u> , DS506, DS589	8
제4조	- 동등성	<u>DS76</u> , DS100, DS137, DS144, DS270, DS271, <u>DS495</u>	7
제4.1조	000	DS287, DS540	2
제5조		DS3, DS5, <u>DS18</u> , DS20, DS21, <u>DS26</u> , DS41, <u>DS48</u> , <u>DS76</u> , DS96, DS100, DS133, <u>DS135</u> , DS137, DS144, DS205, DS256, DS270, DS271, DS279,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84</u> , <u>DS386</u> , DS389, <u>DS406</u> , <u>DS430</u> , <u>DS484</u> , DS525	30
제5.1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 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 준 결정	DS203, <u>DS245</u> , DS270, DS284,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DS389,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3
제5.2조		<u>DS245</u> , DS270,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DS389, <u>DS392</u> , <u>DS430</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89	18
제5.3조		<u>DS245</u> , DS270, DS297, <u>DS367</u> , <u>DS392</u> , <u>DS475</u> , DS524, DS532, DS540	9
제5.4조		<u>DS392</u> , <u>DS447</u> , DS448, <u>DS475</u> , DS506, DS524, DS532, DS589	8

^{9) &}lt;표 2-3>은 김상현 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2019), pp. 54-55을 참고하여 재정리했다.

(표 계속)

	 조항	통상부쟁	(표 계속)
	工名		2十
제5.5조		<u>DS245</u> , DS270,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24, DS532, DS589	15
제5.6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 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 준 결정	DS203, <u>DS245</u> , DS270,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67</u> , <u>DS391</u> , <u>DS392</u> , <u>DS430</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32, DS540, DS589	22
제5.7조		DS287, DS391 , DS392 , DS430 , DS475 , DS495 , DS506, DS524, DS589	9
제5.8조		DS495 , DS524	2
제6조	법의소 이지되어 미 법	DS137, DS144, DS256, DS270, DS271, DS430	6
제6.1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	<u>DS245</u> , DS270, DS297, <u>DS391</u> , <u>DS430</u> , <u>DS447</u> , <u>DS475</u> , DS506, DS524	9
제6.2조	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	<u>DS245</u> , DS270, DS297, <u>DS430</u> , <u>DS447</u> , <u>DS475</u> , DS506, DS524	8
제6.3조	- 건에의 적용	<u>DS475</u> , DS506	2
제7조	투명성	DS21, <u>DS76</u> , DS203, DS237, <u>DS245</u> , DS256, DS279, DS284,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u>DS384</u> , <u>DS386</u> , DS389, <u>DS406</u> , <u>DS430</u> , DS448, <u>DS475</u> , <u>DS495</u> , DS506, DS524, DS525, DS532, DS589	25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DS21, DS41, <u>DS76</u> , DS100, DS203, DS237, DS279,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DS389, <u>DS391</u> , <u>DS392</u> , <u>DS447</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25, DS532, DS540, DS589	26
제10조	EH D AE DO	DS270, DS271, <u>DS293</u>	3
제10.1조	- 특별 및 차등 대우	<u>DS293</u> , <u>DS447</u> , DS448	3
제13조	이행	DS144	1
부속서 B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	DS144, DS205, DS237, <u>DS245</u> , DS256, DS284, <u>DS291</u> , <u>DS292</u> , <u>DS293</u> , DS297, DS389, <u>DS430</u> , DS448, <u>DS475</u> , <u>DS495</u> , DS524, DS525, DS589	18
부속서 B para. 1	의 투명성	DS532	1
부속서 C		DS144, DS237, DS287, <u>DS291</u> , <u>DS292</u> , <u>DS293</u> , <u>DS367</u> , DS389, <u>DS391</u> , DS448, <u>DS475</u> , <u>DS484</u> , <u>DS495</u> , DS506, DS524, DS525, DS589, DS447	18
부속서 C para. 1(a)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DS532, DS540, DS589	3
부속서 C para. 1(b)		DS532, DS589	2

주: 1) SPS 조항별 분쟁 현황은 제소국에 의해 인용된 SPS 조항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²⁾ 진하게 밑줄 친 분쟁사례는 패널 및 상소보고서가 회람되거나 채택된 경우이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 ₹ 2-4>	WTO S	SPS 협정	관련	피소국볔	주요 -	분쟁	쟁점(1995~2019)

국가	일반 규정 (제1조)	기본권리 의무 (제2조)	조화 (제3조)	동등성 (제4조)	위험평가 (제5조)	지역화 (제6조)	투명성 (제7조)	방제검사 및 승인절차 (제8조)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이행 (제13조)	부속서B	부속서C
EU		9	4	1	8	1	4	4	1		4	4
미국	2	9	6	3	9	2	4	5	2	1	2	4
한국		6	1	1	6	1	1	3			1	2
호주		6	4	3	6	2	1	3	2			2
인도		3	3		3	1	2	1			1	
러시아		2	1		2	1	2	2			2	2
멕시코		2	1		2		2	1			1	
인도네시아		2	2		2	1	1	2				2
일본		2		1	2	1	2	1			1	
터키		2			1	1	2	1			2	1
슬로바키아					1							
우크라이나		1	1		1		1	1			1	1
이집트		1	1		1						1	
중국		1	1		1		1	1			1	1
코스타리카		1	1		1	1	1	1			1	1
크로아티아		1	1		1	1	1				1	1
합계	2	48	27	9	47	13	25	26	5	1	19	21

주: 해당 통계는 각 분쟁의 SPS협정의 각 조항별 분쟁 건수이며, 피소국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 검색일: 2020, 7, 11,)

4. SPS 분야별 분쟁 현황

WTO/SPS 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SPS 협정 관련 분쟁은 크게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건강 (Plant Health)과 기타(Other Concerns)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건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WTO 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주요 분야별 차지 비중은 기타(32%), 동물건강(26%), 식품안전(22%), 식물건강(20%)의 순이었다. 하지만 SPS 관련 통상분쟁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회원국 간 특정무역현안(ST

C)¹⁰⁾ 분야별 제기 비중은 동물건강(36%), 식품안전(33%), 식물건강(24%), 기타(7%) 의 순이었다(그림 2-2, 2-3 참조). 일반적으 로 수입국이 통보한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해 당사국은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설명과 협 의를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패널 구성 요청 등의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 않고, 이해 당국 간의 설명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SPS 통상분쟁과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 (STC)의 분야별 제기 건수와 비중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2-2> WTO SPS 협정 관련 분야별 분쟁 추세(1995~2019)



주: DS144는 동물건강과 식물건강이 동시에 쟁점으로 제기되어 여기서는 각 항목에 모두 표시

자료: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¹⁰⁾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이란 WTO SPS 위원회에 통보된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조치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림 2-3> WTO SPS DSB 분쟁과 특정무역현안(STC)에 제기된 분야별 비중 (1995~2019)

- 주: 1) 분쟁의 주제키워드 또는 관련 참고문서에서 식품안전, 식물건강 또는 동물건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타로 분류했다.
 - 2) DS144는 동물건강과 식물건강이 동시에 쟁점으로 제기되어 여기서는 각 항목에 모두 표시
- 자료: WTO SPS 분쟁자료는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특정무역현안 자료는 G/SPS/GEN/204/ Rev.20 참고

Ⅲ. 중국의 SPS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중국 관련 전체 분쟁사례(제소, 피소)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최근 (2020년 7월)까지 중국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공식 회부된 통상

분쟁은 총 65건인데, 그 중 21건은 중국이 제소한 소송이며, 44건은 중국이 피소된 소송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 건수는 제소 및 피소 각각 1건씩이다(표 3-1 및 표 3-2 참조). 이는 농산물 무역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제소 11건, 피소 9건) 및 EU(제소 5건, 피소 9건)의 SPS 협정 관련 분쟁소송보다 훨씬 적은 제소 및 피소 건수이다.

<표 3-1> 중국이 제소한 통상분쟁 현황

제소국	모든 협정분야 전체	농업협정 관련	SPS 협정 관련
중국	DS252, DS368, DS379, DS392, DS397, DS399, DS405, DS422, DS437, DS449, DS452, DS471, DS492, DS515, DS516, DS543, DS544, DS562, DS563, DS565, DS587	DS392	DS392
중국차지 비중	3.5%(21/593)	1.2%(1/84)	2%(1/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표 3-2> 중국이 피소된 통상분쟁 현황

피소국	모든 협정분야 전체	농업협정 관련	SPS 협정 관련
중국	DS309, DS339, DS340, DS342, DS358, DS359, DS362, DS363, DS372, DS373, DS378, DS387, DS388, DS390, DS394, DS395, DS398, DS407, DS413, DS414, DS419, DS425, DS427, DS431, DS432, DS433, DS440, DS450, DS451, DS454, DS460, DS483, DS489, DS501, DS508, DS509, DS511, DS517, DS519, DS542, DS549, DS558, DS568, DS569	DS390, DS388, DS387, DS568, DS511, DS451	DS589
중국차지 비중	7.4%(44/593)	7.1%(6/84)	2%(1/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하지만 중국은 SPS분쟁의 제3자로서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예컨대 2008년 이전 발생한 총 31건의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에서 발생한 전 체 49건의 SPS 분쟁에서 중국은 총 16건의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였다(표 3-3 참조). 특히 2008년부터 중국의 농산물 무역이 크 게 증가하면서 제3자로서 SPS협정과 관련

된 분쟁에 참여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 SPS 분쟁에 중국은 오직 6건에만 제3자로 서 참여하였으나, 2008년 이후 발생한 총 16건의 SPS 분쟁에서는 10건에 제3자로 참여하였다.

<표 3-3> 중국이 제3자로서 참여한 통상분쟁 현황

제3자	전체 분야	농업협정 관련	SPS협정 관련
중국	DS108, DS174, DS207, DS212, DS243, DS245, DS248, DS249, DS251, DS253, DS254, DS257, DS258, DS264, DS265, DS266, DS267, DS268, DS269, DS270, DS273, DS276, DS277, DS280, DS281, DS282, DS283, DS285, DS286, DS287, DS290, DS291, DS292, DS293, DS294, DS295, DS296, DS299, DS301, DS302, DS308, DS312,	DS108, DS207, DS245, DS265, DS266, DS267, DS283, DS291, DS292, DS293, DS323, DS334,	DS245, DS270, DS287, DS291, DS292, DS293, DS384, DS386, DS389, DS391, DS430, DS447,

제3자	전체 분야	농업협정 관련	SPS협정 관련
	DS315, DS316, DS317, DS320, DS321, DS322, DS323, DS327, DS331, DS332, DS334, DS335, DS336, DS337, DS341, DS343, DS344, DS345, DS347, DS350, DS353, DS366, DS369, DS371, DS375, DS376, DS377, DS381, DS384, DS386, DS389, DS391, DS396, DS400, DS401, DS402, DS403, DS404, DS412, DS415, DS416, DS417, DS418, DS420, DS421, DS423, DS426, DS429, DS430, DS434, DS435, DS436, DS438, DS441, DS444, DS445, DS447, DS453, DS456, DS456, DS457, DS458, DS461, DS462, DS464, DS467, DS469, DS472, DS473, DS474, DS475, DS476, DS477, DS478, DS479, DS480, DS482, DS484, DS495, DS486, DS487, DS488, DS490, DS491, DS493, DS494, DS495, DS496, DS497, DS499, DS502, DS504, DS505, DS510, DS512, DS513, DS518, DS521, DS522, DS523, DS524, DS526, DS529, DS531, DS533, DS534, DS536, DS537, DS538, DS554, DS556, DS557, DS559, DS560, DS561, DS564, DS566, DS557, DS559, DS560, DS579, DS580, DS581, DS583, DS589, DS577, DS578, DS579, DS580, DS581, DS583, DS585	DS341, DS389, DS400, DS401, DS438, DS455, DS457, DS477, DS478, DS484, DS579, DS580, DS581	DS475, DS484, DS495, DS524
중국의 비중	30.2%(179/593)	29.8%(25/84)	32.7%(16/49)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psims.wto.org/en/OtherDocuments/Search 최종 검색일: 2020, 7, 11,)

아래에서는 SPS 분쟁 관련 중국이 미국에 제소한 소송과 캐나다에 의해 피소된소송을 중심으로 각 소송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DS392)¹¹⁾

가. 제소배경

미국은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근거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우선 2007년 WTO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 현안(STC257, 부록 1 참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였다. 그 후 중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 속에 양자 간 논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에 난항을 겪자중국은 2009년 4월 정식으로 WTO DSB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는 공식적인통상분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가금

¹¹⁾ Pena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R, 29 September 2010.

류 수입 관련 갈등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초에 중국과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하자 양국 은 서로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12)다. 그 후 양국은 협의를 통해 2004년 4월 가금류 무 역 문제를 상호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합 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먼저 미국 산 가금류 수입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미국은 자국산 가금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에도 농식품 안전과 자국민 건강보호 차원의 '관련 법률 절차 이행'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계속 금지해왔다(그림 3-1 참조).





주: 2020년도의 자료는 5월까지이며, 2020년 2월 중국은 2015년부터 미국의 조류독감(AI) 발생을 근거로 취해오던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출처: https://www.kita.net/ 최종 검색일: 2020. 7. 11.)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미국산 가금류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중국의 전체 가금류 수입(79만톤)의 73.4%(58만톤) 가량이 미국산이었다. 하지만 중국산 가금 류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2004년 이후 계속 불허되었다. 미국산 가금류(특히 닭고기) 제품은 높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중국

¹²⁾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4집, 제4호, 2012.

시장 점유율을 높여 온 반면에 미국은 중 국산 가금류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문 제가 아직 미해결되었다며 당초 합의와 달 리 지속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온 것 이다. 중국은 이러한 불평등한 양국 간 가 금류 무역이 5년(2004~2009년)간 지속되자 양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은 2009년 3월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종합세출법안 제727조(이하 "제727조")13)를 통해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위한 규정 제정과 시행을 위해 재정자금을사용할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의공식적인 WTO 분쟁제소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와 자국민의 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임장이었지만 중국은 이 조항이 중국산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뿐만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특히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만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임을 주장하며 2009년 4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한 것이다.

나. 소송쟁점

본 소송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주의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식품안전과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2010년 9월 WTO 패널은 최종보고 서를 통해 미국의 조치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며, 중국경제에 손해를 미쳤다고 밝 히며, 특히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다른 WTO 회원국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 만 해당 조치를 시행한 것은 불공평한 측 면이 있기에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아래는 패널분쟁 과정에서 인용된 주요 조항별 판정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패널은 미국의 종합세출법안 제727조가 회원국(미국)의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SPS 협정의 부속서

^{13) 2009}년 3월 미국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Act)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용할 수 없음은 명문화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ne of the funds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be used to establish or implement a rule allowing poultry products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tates, 2009).

A(1)(b)¹⁴⁾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SPS 협정 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1) 제727조는 SPS협정의 제5.1조(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고려), 제5.2조(위험평가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과학적 증거 및 관련 검사방법 적용) 및 제2.2조(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과학적 근거 필요)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을내렸다. 이는 특히 제5.2조에 명시된 과학적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고, 또한 충분한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제2.2조와 일치하지 않는 다고 판정하였다.

(2) 패널은 제727조가 SPS 협정 제5.5조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 한을 초래하는 경우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 제2.3조(차별 금지 및 무역 위장적 금지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에 대해서만 부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는 다른 WTO 회원국의 가금류 제품과 차 별적 적용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제727조는 SPS 협정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며, 미국 농 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¹⁵⁾ 승인절차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종합세출법안의 공동설명문(Joint Explanatory Statement, JES)¹⁶⁾에서제727조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정했다.

둘째, 패널은 제727조가 가금류 제품의 국제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지었다. 특히 GATT1994 협정의 제1.1조(최혜국 대우), 제11.1조(수 량제한금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패널은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 제품을 다른 회원국보다 덜 유리한 방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패널은 제727조가 SPS 협정의 제5.6조(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와일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DSU 제11조에 따른 패널의 역

¹⁴⁾ 부속서 A(1)(b):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보호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¹⁵⁾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 미 농무부(USDA) 산하 기관으로 육류, 가금류 및 가공 계란제 품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검사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¹⁶⁾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Congressional Record Vol. 155, No. 31, p. H1679, February 23, 2009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2009/02/23/house-section/article/H1653-6, 2020.8.9. 검색>

다. 소송경과

2009년 3월 미국의 종합세출법안 시행 이후 두 달이 경과한 5월에 미 농무부 (USDA)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 측에 2006년 이후 시행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조례 및 검사와 통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 제공을 요청 하며 다시 양자간 협의개최 가능성을 타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WTO에 제소했 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09년 6월 공식적

할을 넘는 범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으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분쟁해결 절 차에 돌입하였다. 아래는 미-중간 가금류 수입관련 분쟁경과이다:

- 2009년 4월 17일: 중국은 WTO 분쟁해 결기구(DSB) 제소
- 2009년 6월 23일: 중국측 패널 요청
- 2009년 7월 31일: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 2009년 9월 23일: 패널위원 구성
- 2010년 9월 29일: 패널 최종보고서 회람
- 2010년 10월 25일: 패널 보고서 정식 통과

<표 3-4> 중국이 제소한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 관련 분쟁(DS392) 요약

분쟁사안	DS392: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피소국-제소국	미국-중국
제3국	브라질, EC, 과테말라, 한국, 대만, 터키
인용 된 협정 및 조항 (협의 요청에서 인용)	농업협정:제4.2조GATT 1994:제1:1조, 제X:1조SPS 협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 제5.7조, 제8조
인용 된 협정 및 조항 (패널 요청에서 인용)	GATT 1994: 제1:1조, 제X1:1조 농업협정: 제4.2조 SPS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 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8조
분쟁 제소 날짜	2009년 4월 17일
패널 요청 날짜	2009년 6월 23일
패널 설치 날짜	2009년 7월 31일
패널위원 구성 날짜	2009년 9월 23일
패널 보고서 회람 날짜	2010년 9월 29일 (2010년 10월 25일 채택)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2_e.htm최종 검색일: 2020. 7. 11.)

본 소송은 패널 설치부터 분쟁 해결까지 약 14개월 소요되었는데, 이는 WTO 분쟁 해결기구의 평균 소요 시간과 비슷하다!7). 중국은 본 분쟁에서 승소하였으며¹⁸⁾, 미국은 제727 조항을 2010년 종합세출법안에서 제743조¹⁹)항으로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마무리되었다.

3.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²⁰⁾ 수입제한 조치(DS589)²¹⁾

가. 피소배경

전 세계에서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 자의 최대 수입국이다. 2002년부터 중국은 카놀라 종자 총수입액의 약 90% 이상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해 왔으며, 카놀라 종자 는 2012년부터 중국의 캐나다산 전체 수입 품(수입액 기준)의 1위~5위내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이다(표 3-5 참조). 즉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2018년 캐나다의 전 세계 카놀라 종자 총수출액의 40%를 수입했다²²).

그런데 2019년 3월 중국은 캐나다산 수입 카놀라종자에서 검역상 유해물질(잡초종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1일과 2019년 3월 26일 각각 캐나다의 대표적 수출업체인 리차드슨(Richardson)과비테라(Viterra)로 부터의 카놀라 종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캐나다수출회사들의 경우 중국에 카놀라 종자를계속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였지만기존 보다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 수출이가능하도록 했으나 수입제한 조치를 받은 2개 회사에 비해 수출 규모가 매우 작은회사들이었다.

¹⁷⁾ Dispute Brochure 20-Year Edition, 2015 참고.

¹⁸⁾ 패널은 미국이 SPS협정으로 포함한 몇 가지 국제 조항에 위반하였다고 판결했지만 제727조이 이미 만료 되었기 때문에 제727조를 SPS 협정 및 GATT 1994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을 권장 하지 않았다.

¹⁹⁾ 사실상 제743조은 패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수정한 것이며, 제727조에 대한 조건부 수정이라 중국은 여전히 중국산 가금류에 차별적 요건을 설정했다는 불만을 표시한 바 있지만, 더 이상의 공식적인 분쟁 제기는 없었다.

²⁰⁾ 해당 분쟁의 협의 요청서에서 '종자'라는 용어는 가공 또는 소비용으로 재배용이 아닌 종자를 지칭한다.

²¹⁾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Chin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anola Seed From Canada, WT/DS589/1, 12 September 2019.

²²⁾ canolacouncil.org, "Challenges persist for canola seed exports to China", March 21, 2019, https://www.canolacouncil.org/china-update/, 2020.8.9 검색>

<표 3-5>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현황

다위: 천불

				그게 연결
연도	중국의 카놀라 종자 총 수입액(A)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수입액(B)	캐나다산 캐놀라 종자 수입 비중(C)	캐나다산 수입품목 중 순위
2002	66,895	10,733	16.0%	12
2003	18,224	18,224	100.0%	17
2004	119,737	118,882	99.3%	14
2005	71,320	59,896	84.0%	18
2006	206,777	206,777	100.0%	10
2007	349,921	349,706	99.9%	9
2008	754,036	740,825	98.2%	8
2009	1,385,180	1,361,341	98.3%	1
2010	777,618	777,618	100.0%	6
2011	797,701	797,701	100.0%	6
2012	1,954,100	1,954,100	100.0%	3
2013	2,419,032	1,843,034	76.2%	3
2014	2,781,187	2,480,064	89.2%	1
2015	2,005,955	1,769,711	88.2%	2
2016	1,467,646	1,439,300	98.1%	2
2017	2,099,103	2,073,273	98.8%	1
2018	2,119,336	2,106,727	99.4%	3
2019	1,132,015	1,068,542	94.4%	4
2020년 5월까지	519,718	383,062	73.7%	5

주: 카놀라 종자의 통계자료는 HS120510기준으로 추출 및 정리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출처: https://www.kita.net/ 최종 검색일: 2020. 7. 11.)

이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상 불순물 포함 문제는 과학 적 증거에 기반하여 양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카놀라 종자 의 정상수출을 위해 여러 차례 중국과 협 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캐나다 는 더 이상 양자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2019년 9월 9일 에 중국을 WTO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 하였다.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의 수입금 지가 명분적으로는 주요 수출업체 제품에 서의 불순물 검출이라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지만 캐나다측은 중국 당국의 수입제한 조치의 배경에는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사 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18년 12월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 화웨 이의 멍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이 미국 요 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중국이 캐나다를 표적으로 삼은 경제보복 조치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곧 바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하고, 곧 이어 캐나다 산 카놀라 종자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캐나 다 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태가 카놀라 종자 수입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 으로 비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나. 소송쟁점

본 소송에 대해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중 국 측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중단조 치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산 카 놀라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불순물 문제는 과학적 증거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나 중국 당국의 수입금 지 조치는 캐나다를 표적으로 삼은 과도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중국 은 캐나다산 카놀라의 수입 중단조치는 정 상적인 검역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 예 방 조치로 합리적이며, 중국 법규와 국제 관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9월 캐나다 측이 WTO 분쟁해결 기구(DSB)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직까 지 패널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중국의 자국산 캐놀라 종자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라 며 주장하고 있는 주요 조항과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는 중국의 카놀라종자 수입 조치가 WTO SPS 협정 관련 16개 조항, GATT1994 관련 5개 조항, TFA(무역원활 화) 협정²³⁾관련 3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며 제소하였다. 아래는 캐나다 측이 주요 국제협정을 인용하여 중국 측이 위반하고

²³⁾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7년 2월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간 정보교환, 대개도국 우대조항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협정이다. 특히 WTO 무역원화화 협정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이행능력에 따라 조항별 이행의무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 규정을 도입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주요 협정별 근거조 항들이다.

첫째, 캐나다는 SPS협정 측면에서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에 대한 조치는 다음 조항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제2.2조(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의 무);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과학적 원칙 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식물의 생명이 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제2.3조(부당한 차별금지 및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적 제한 금지 의무): 동일한혹은 유사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동 조치가 임의적으로 또는 정당하지 못하게 특정 회원국(캐나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 (3) 제3.1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국 제 기준, 지침, 권고에 기초): 중국의 조치 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기초 하지 않았으며, 특히 식물검역관련 핵심 국제기구인 IPPC²⁴)의 국제 식물위생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ments, ISPMs)에 관한 국제지침에 근거하지 않았다.

- (4) 제3.3조(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을 위한 조치): 중국의 조치는 국제 표 준, 지침 또는 권고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또한 동 조치 가 중국이 추구하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 한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 (5) 제5.1조(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고려) 및 제 5.2조(위험평가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관련검사방법 적용): 중국의 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방법 또는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위험평가에 있어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 (6) 제5.4조(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무역 영향을 최소화하 려는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 (7) 제5.5조(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자의적 조치 방지): 중국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부정당 하게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대해 차별화

²⁴⁾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1991년 4월 3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산하 기구이다.

했다.

- (8) 제5.6조(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 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 중국의 조치는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 적인 조치가 되었다.
- (9) 제5.7조(합리적인 기간 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 중국의 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입수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조치를 채택하거나유지할 수 없다.
- (10) 제7조(투명성): 중국은 해당 조치를 공표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특 히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적용되 는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 (11)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대한 정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검역검사에 사용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았으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의 무역 활동을 저해했다.

- 둘째, 캐나다는 또한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중단 조치는 GATT1994 협정상 아래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1) 제1.1조(최혜국대우): 중국이 캐나다 산 카놀라 종자 수입과 관련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의무보다 불리하지 않을 최혜국 대우의무(MFN²⁵))를 위반하고 있다.
- (2) 제3.4조(내국민대우): 중국이 캐나다 산 카놀라 종자 수입에 대해서 중국이 '유 사'제품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특혜를 주지 않았다.
- (3) 제10.3(a)조(공평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중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 결정및 판결을 균일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 (4) 제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중국의 조치는 GATT 11조 수량제한금지 위반으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을 제 한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무역원활화협정(TFA) 관 련하여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제한 조치는 주로 다음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²⁵⁾ MFN: Most favored nation.

- (1) 제1.1조(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중국은 캐나다와 무역업자들이 조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에 대한 정보 를 신속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 (2) 제5.1조(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식품, 사료에 대한 국경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와

지침을 관련 당국에서 발표했지만, 이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종 료 또는 중단되지 않았다.

(3) 제7.4.2조 및 제7.4.4조(상품의 반출 및 통관): 중국은 위험관리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또한 동조치는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에 기반한 적절한 조치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표 3-6> 중국이 피소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 관련 분쟁(DS589) 요약

분쟁사안	DS589: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금지조치
피소국-제소국	중국-캐나다
제3자	-
인용 된 협정 및 조항 (협의 요청에서 인용)	SPS 협정: 제 2.2 조, 제 2.3 조, 제 3.1 조, 제 3.3 조, 제 5.1 조, 제 5.2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7 조, 제 8 조, 부속서 B, 부속서 C, 부속서 C para. 1(a), 부속서 C para. 1(b) GATT 1994: 제 1.1 조, 제 3.4 조, 제 10.3(a)조, 제 11.1 조, 제 23:1(b)조 TFA 협정: 제 1.1 조, 제 5.1 조, 제 7.4 조
분쟁제소 날짜	2019 년 9월 9일
양국간 WTO 공식협의 날짜	2019년 10월 28일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9_e.htm 최종 검색일: 2020. 8. 9.)

다. 소송경과

2019년 1월 이후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역 유해성분(잡초종자) 검출을 근거로 캐나나 주요 수출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후 양국은 여러 차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캐나다는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입 중단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더 이상 진전 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측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검역상 이유라

기 보다는 사실상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구금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이 사안을 2019년 9월 9일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했으며, 2019년 10월 28일 처음으로 WTO 차원에서 양국간 제네바에서협의가 있었다(표 3-6 참조). 하지만 그 이후 공식적인 WTO 분쟁해결기구(DSB)를통한 캐나다 측의 패널설치 요청 등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신보도26)와 캐나다 캐놀라 협회 홈페 이지 내용에 따르면 2020년 3월 양국 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가 있었으 나 아직도 캐나다의 핵심적 캐놀라종자 최 대 수출기업인 리차드슨(Richardson)과 비 테라(Viterra)의 중국 수출허가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에 대한 캐나다산 카놀라종자 수출은 평년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가 더 이상 WTO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반대 로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실패하는 등 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고, 특히 캐나다 카놀 라 생산자 협회는 이 문제가 오랜 시일이 걸리는 WTO 분쟁해결 기구를 거치지 않 고 양국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카놀라 종자를 중국에 정상적으로 수출 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중국 양측 정부는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 해 조속한 시일내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 이라는 임장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 사 안은 양국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 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 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 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난 20년간 총 65건의 WTO 분쟁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2건이 SPS 관련 분쟁이다. 이렇게 2건의 중국의 SPS 분쟁 중 1건은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건이며, 다른 한건은 중국이 캐나다로부터 피소된 사안이다. 먼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위생검역조치와 관련된첫 제소건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강국

^{26) &}quot;UPDATE: China, Canada discuss continuation of reduced canola seed trade" By Reuters News Service, March 31, 2020 https://www.tridge.com/news/update-china-canada-discuss-continuation-of-reduce 2020.8.9 검색

인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 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27)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 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물론 欒信杰, 陳怡晨(2013)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종료되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을 명분으로하는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과 소비자 건강 및 안전보호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요구사항은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이 승소했다고 해서 중국산 가금류 제품이 순로좁게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수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미국은 여전히SPS 협정 제3.3조에 따라 국제 표준보다더 높은 표준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가금류제품의 대미 수출에 게속 제한을 부과하고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郭霳, 李曉玲(2012)의 연구에 따 르면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첫 농산물관련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과 국내 지원정책 수립에 심대 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우선 이 분쟁은 중국산 농식품 수출에 있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역상대국에서 중국 산 농식품의 안전문제가 어떻게 평가받는 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중국 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 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WTO 패널 판정 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차별하는 종합세출법안 제727 조항을 수 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중국의 WTO 분쟁 해결기구를 통한 전략적 제소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중국은 자국의 농식품 수출 통상이 익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자국산 농 식품에 불공정한 대우를 취하는 국가와 조 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농식품 이 생산 및 유통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중국이

²⁷⁾ Wen-yi, M. U. "Improv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ystem in China – SPS Agreement to Perspective", Standard Science, 2010.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SPS 관 련하여 피소된 것이다. 현재 WTO 분쟁 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 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 측은 이 사안이 검역 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 다 중국의 다른 조치에 대한 불만을 대 신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사실 12월 중국 2018년 화웨이 (Huawei)부회장이자 CFO(최고재무책임 자)인 명완저우를 캐나다 정부가 체포한 뒤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고, 중국은 바 로 캐나다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카놀라 종자의 수입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 캐 나다 정부는 자국산 캐놀라종자 전체 수 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 진 입축소에 대한 자국 생산 농가의 우려와 압력을 수용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 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

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시회의 공개적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중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관련 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찾아낸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 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SPS 관련 무역분쟁에 서 피소를 많이 받는 반면에 제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전세 계 SPS관련 분쟁 49건의 12%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해 피소를 당했는데, 이는 EU(9 건)와 미국(9건)을 이어서 호주와 함께 3번 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SPS 관련 피소건수(6건)는 한국관련 전체 무역 분쟁 피소건수(19건)의 32%하는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제기한 전체 21건의 WTO 분 쟁 제소 건에서 SPS 관련 제소 건수는 전 무하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 극적인 국내 위생검역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 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 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위생검역조치를 면밀히 모 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 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 체 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SPS 분쟁에서 관심이 있는 회원국은 제3자로 참여하여 협의에 참가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달리 제3자로 참여하는 빈도가 낮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WTO 체제에서 발생한 SPS분쟁에서 중국(16건)은 EU(17건) 다음으로 제3자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3자로 7건의 SPS관련 분쟁에 참여하여 전체 제3자참여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SPS 관련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간에 발생하는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에 제3자로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 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 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 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 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 역주의적 제도나 정책이 확산추세에 있음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 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무역 분쟁의 20% 이상이 농식품 관련 SPS 혹은 TBT 관련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주요국들은 자국 국민과 동식물 위생 및 건강을 위해 농식품 관련 SPS/TBT 조치의 도입과 운영상황을 통보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SPS/TBT 조치에 대해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SPS/TBT 조치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구축을 통해 농업통상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생검역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무역 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 학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구의 지침이나 표준 과의 조화(harmonization), 그리고 조치의 공표와 시행 등이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 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 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호주, 뉴질 랜드, 캐나다, EU, 칠레, 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 이행 심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위생검역조치로 인해 상대국의 농산물 수출 감소시, 이해 당사국은 SPS 국제규범 준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공세적으로 우리에게 통상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SPS 협정의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인 위험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증진시키면서 외래 질병 및 병해충 전문가를 적극양성하고, 국제 SPS 협상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 전문가가 적재적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SPS 관련 무역분쟁 대비대응체계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 가능 농산물의 해외 시장개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역 상대국의 위생검역조치에대한 공세적 대응 방안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다. SPS 관련 통상 대응 능력 강화는 또한 사전적으로 WTO 혹은 FTA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되기 전에 SPS 사안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집, 제4호, 2012.
- 김상현 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사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9.
- 전정기.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63-286. 2015.

2. 외국논문

- 郭雳,李晓玲. 「WTO争端裁决对我国农业支持政策的影响分析」, 南京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12(2), 2012.
- 栾信杰,陈怡晨.「美国——影响中国禽肉进口的某些措施"争端(DS392)研究」. 国际商务研究,34(190). 2013.
- Wen-yi, M. U. "Improv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ystem in China—SPS Agreement to Perspective", Standard Science, 2010.

3. 온라인자료

- WTO. 1994년 GATT 협정문(국문본). 외교부, 2001.
-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외교부, 2001.
-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2017.
- WTO. Dispute Brochure 20-Year Edition. 2015.

-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Congressional Record Vol. 155, No. 31, p. H1679, February 23, 2009.
- Pena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WT/DS392/R, 29 September 2010.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Chin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anola Seed From Canada, WT/DS589/1, 12 September 2019.

[국문초록]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2018년 기준 2,78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 166.3억 달러에서 2018년 827.9억 달러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고, 수입은 2001년 210.3억 달러에서 2018년 1,951.7억 달러로 연평균 15.5%씩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추세는 불가피하게 향후 농산물 무역과 크게 연관되는 SPS관련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WTO 가입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2건의 SPS 관련 소송을 경험하였는 바, 그중 하나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미국에 대한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관련 1건의 피소가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건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족 대우에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 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 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28).

²⁸⁾ 전정기.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63-286. 2015.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2019년 9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검역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Huawei) 부회장인 명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라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캐놀라 종자 전체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WTO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농산물 무역, 중국

[Abstract]

An Analysis of China's WTO SPS Disputes and Policy Implications

Jeongbin Im · Yinhua Quan

In 2018, China's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reached \$278 billion, becoming the world's second-largest agricultural trader. From 2001 to 2018, Chin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from \$16.6 billion to \$82.8 billion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0.2%, while imports increased from \$21.3 billion to \$195.17 billion during the same periods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5.5%. Thus, China has now emerged as the world's largest ne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huge growing trend in China's agricultural trade inevitably raises the possibilit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disputes which is largely related to agricultural trade. There have been two official SPS-related disputes so far since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2011. One is to complain to the WTO about certain measures taken by the U.S. which affected the import of Chinese poultry products. The other is that China has been accused of taking measures regarding the import of Canadian canola seeds. Although the number of official SPS disputes involving China is not high, Chin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16 cases of WTO SPS disputes as a third party, which is the second-highest after the EU. This impli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pay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SPS-related iss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atus of SPS disputes since the WTO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5, and especially analyze the SPS disputes involving China. Based on these anlayses results, we wan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PS disputes as well as the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s SPS-related policies.

First of all, the dispute over the U.S. ban on Chinese poultry imports (DS392) was officially filed by China against the U.S. in 2009 to protect its quarantine sovereignty and agricultural export interest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aspect that raising and winning the case in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poultry imports by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In particular,

with winning the case through active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s new status in trade disputes has been found in this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China challenged the U.S. legal system to the "unfair treatment" of U.S. legislation in relation to Avian Influenza (AI) and won in the end through making effEctivee use of the articles from the SPS Agreement in the procedures of WTO dispute settlement.

The dispute over China's import restriction on Canadian canola seeds(DS589) has not to be set up an official panel since Canada has filed a complaint at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in September 2019. Canada basically sees the issue as China's retaliation for the Canadian government's arrest of Huawei Vice Chairman Meng Wanzhou, rather than a quarantine issue that is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resolve. For the mo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market,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the total exports of Canadian canola seeds, the Canadian government no longer officially requests the WTO to proceed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wants to find a solu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n view of these two SPS disputes of China, it is assessed that China is basically utilizing both justification and practicality in WTO trade disputes under the principle of "not wanting but not afraid of trade wars." as a world power. First of all, China is actively using a strategy to form a confrontation between protectionism and free trade policies in favor of global public opinion by raising objec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ase of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U.S. restrictions on imports of Chinese poultry. Also, in case of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Canadian canola seeds for quarantine reasons, China is taking advantage of its strong purchasing power to put pressure on the Canadian government. while making efforts to prevent public criticism and status decline from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xpected that SPS-related disputes will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due to the spread of protectionism by many countries following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launch of U.S.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and the recent outbreak of the global Covid-19.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PS disputes over Korea's agricultural trade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so, an effective and efficient coping mechanism needs to be prepared. In Korea's trade

structure, which traditionally exports manufactured goods and imports agricultural products, the trade disputes caused by SPS measures will pose a huge burden to SPS-related agenc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that prepares for the scientific-based implementation of SPS measures and to foster experts in trade disputes related to SPS issues.

Keywords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ispute Settlement Body(DSB),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Agricultural Trade, China

<부록 1> 중국이 제기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38건)

STC 제기 사유 제기국 한만 지지국 지지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19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제기		것으로
대한 수입제한(수입위험본석 개정 관련) 태국 레이시어, 필리핀 스리랑가, 베트남 119 코드린 나방 발견에 따른 중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긴급)SPS통보문, G/SPS/N/PH_/35)	59	실목포장재료에 영항을 미치는 잠정규정		EU	미국	01/11/1998	01/10/2001	2	0	01/08/2014
대한 수업제한 조치(긴급SPS통보문, G/SPS/N/PHL/35) 148 식품 위생 법 개정 관련 중국 한국 일본 01/11/2002 02/04/2008 2 - 1	85			레이시아,필리핀,	호주	01/03/2001	18/10/2007	9	•	16/10/2013
153 배양 배지에 담긴 중국산 분재(Penjing) 중국 EU		대한 수입제한 조치(긴급SPS통보문,	중국		필리핀	01/03/2002		0	•	
수입금지 169 실충제 최대전류허용 기준 규제 통합 및 아르헨 탐나, 중국 보기 및 전기에 대한 실충제 최대전류허용기준 중국 변(우) 의 1/10/2004 1	148	식품 위생 법 개정 관련	중국	한국	일본	01/11/2002		0	-	
대개정	153		중국	EU	미국	01/11/2002	02/04/2008	2	-	
191 식품에 대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기준 중국 EU 01/06/2004 0 - 198 영유아식품의 아플라톡신(aflatoxins)과 오크라톡신 A(Ocratoxin A) 규제 FU 01/10/2004 0 - 201 살균제 보스칼리드(boscalid)			티나,	칠레,콜롬비아,쿠 바,온두라스,멕시 코,파라과이,필리	EU	01/06/2003	01/10/2004	1	_	
198 영유아식품의 아플라톡신(aflatoxins)과 오크라톡신 A(Ocratoxin A) 규제	178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개정	중국		일본	01/10/2003		0	-	
오크라톡신 A(Ocratoxin A) 규제	191	식품에 대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기준	중국		EU	01/06/2004		0	-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련 203 소 유래 물질 첨가 상품(식품, 화장품 모함)에 관한 규정 207 차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출 규정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 212 살충제, 수의용 약품, 사료 첨가물의 최대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16 중국 배(Ya) 수입 유예(검은점무늬병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 (Alternaria sp)의 발견) 217 일본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규정 관련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 검출 기준) 218 열처리된 짚과 사료작물에 대한 수입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198		중국		EU	01/10/2004		0	_	
포함)에 관한 규정 티나, 중국 인도 EU 01/03/2005 0 ▲ 16/10/2013 207 차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출 규정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 중국 인도 EU 01/03/2005 19/10/2011 9 ▲ 16/10/2013 212 살충제, 수의용 약품, 사료 첨가물의 최대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중국, 미국 호주, 필리핀 일본 01/03/2005 19/10/2011 9 ▲ 16/10/2013 216 중국 배(Ya) 수입 유예(검은점무늬병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 (Alternaria sp)의 발견) 중국 EU 미국 01/03/2005 0 ○ 16/10/2013 221 일본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규정 관련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 검출 기준)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222 열처리된 짚과 사료작물에 대한 수입 유예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중국		일본	01/10/2004		0	_	
방법에 대한 지침 212 살충제, 수의용 약품, 사료 첨가물의	203		티나,		미국	01/10/2004		0	_	
최대잔류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미국	207		중국	인도	EU	01/03/2005		0	•	16/10/2013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 (Alternaria sp)의 발견) 221 일본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중국 기계	212			호주, 필리핀	일본	01/03/2005	19/10/2011	9	•	16/10/2013
규격 규정 관련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 검출 기준)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222 열처리된 짚과 사료작물에 대한 수입 유예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 01/04/2008	216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	중국	EU	미국	01/03/2005		0	0	16/10/2013
ନ୍ଜା	221	규격 규정 관련 (아스타크산틴	중국		일본	01/03/2005		0	0	16/10/2013
241 크리스마스 나무 수입제한 중국 미국 01/06/2006 02/04/2008 3 ㅇ 16/10/2013	222		중국		일본	01/06/2005	02/04/2008	3	0	01/04/2008
	241	크리스마스 나무 수입제한	중국		미국	01/06/2006	02/04/2008	3	0	16/10/2013

(계속)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256	중국산 닭 조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중국		EU	18/10/2007	28/10/2009	3	•	08/10/2008
267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리 강화	중국, 미국	에콰도르, 뉴질랜드	일본	24/06/2008	29/06/2010	5	-	
1	중국산 배 수입제한(병해총위험분석 지연 관련)	중국		미국	24/06/2008	23/06/2009	3	-	
	아시아매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 및 화물 이동과 관련된NAPPO 규제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08/10/2008	29/06/2010	4	0	16/10/2013
1	육류, 가금육, 또는 계란이 소량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	중국	일본, 한국	미국	23/06/2009		0	-	
284	중국산 목재 수공예품 수입 규제	중국		미국	23/06/2009	29/06/2010	3	0	16/10/2013
289	메기 생산과 검역에 관한 조치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28/10/2009	27/10/2016	8	-	
297	애완동물용 식품 수출기업 등록 관련	중국		캐나다	29/06/2010		0	0	16/10/2013
1	미국의 식품안전강화법(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9) 관련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29/06/2010	27/03/2012	4	-	
322	폴리아미드와 멜라민 플라스틱 부엌용품	중국, 홍콩 (중국)		EU	30/03/2011	19/10/2011	2	-	
330	인도네시아 항구 폐쇄		아르헨티나,호주, 캐나다,칠레,일본, 한국,남아공,대만, 태국,우루과이	인도네 시아	27/03/2012	26/03/2015	7	•	16/10/2013
331	밀가루에 대한 알류미늄 검출 기준	중국		EU	27/03/2012		0	-	
352	미국의 cGMP 개정과 식품현대회법 재정 관련	중국		미국	27/06/2013		0	_	
1	식품안전 감독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의 승인에대한 문제	중국	벨리즈, 브라질, 한국	미국	16/10/2013		0	-	
1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제 인증 규제	중국		브라질	09/07/2014		0	-	
1	유럽연합의 내분비교란 화합물 구분을 위한 규정 개정	티나,중 국,에콰	호주,베냉,브라질, 부르키나파소,부 룬디,캐나다,중앙 아프리카공화국,	EU	25/03/2014	07/11/2019	15	_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라,인도, 파나마, 파라과	칠레,콜롬비아,코 스타리카,도미니 카공화국,이집트, 엘살바도르,감비 아,가나,기니,온두 라스,인도네시아, 자메이카,케냐,한 국,마다가스카르, 멕시코,뉴질랜드, 나이지리아,파키 스탄,필리핀,세네 갈,시에라리온,남 아공,대만,태국,토 고,우루과이,베트 남,잠비아, 칠레,러시아						
415	미국의 해산물 수입 감독 프로그램	중국		미국	27/10/2016	12/07/2018	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ecision 2002/ 994/EC가 규정하는특정물질 미검출 증명 의무 관련-항생제(동물의약품), 실균제, 색소 등과 관련됨(클로람페니톨 (chloramphenicol), 트로프란(nitrofuran), 말라이트 그린(malachite green), 크리스털바이올렛(crystal violet) 등).	중		EU	12/07/2018	18/07/2019	4	-	
	유럽연합의 살균제 폴펫(Folpet)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MRL 기준 관련	중국		EU	12/07/2018	07/11/2019	4	_	_
459	New EU MRLs for lambda-cyhalothrin	중국	파라과이	EU	18/07/2019	07/11/2019	1	_	

주:▲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

<부록 2> 중국에 제기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32건)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114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의 식 품안전성 관련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01/03/2002	01/11/2002	2	_	
115	초파리 관련 감귤류 및 기타 과일에 대한 수입제한	아르헨 티나		중국	01/03/2002	01/03/2006	2	0	01/03/2006
127	네덜란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EU		중국	01/06/2002	01/06/2003	3	0	01/06/2003
128	회장품 수입요건	EU		중국	01/06/2002	01/06/2003	2	0	16/10/2013
142	대장균 불검출 기준	미국		중국	01/11/2002		0	_	
143	목재 포장재 규정	EU		중국	01/11/2002	01/06/2003	1	0	13/10/2010
157	수산물의 출입을 위한 방역대책	EU	미국	중국	01/04/2003	01/06/2003	1	0	01/06/2003
184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식 품 수출 공인 증명 요건 통보 (G/TBT/ N/CHN/1209) 관련	l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중국	01/03/2004	18/07/2019	7	-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주로부터의)	미국	캐나다	중국	01/10/2004	01/03/2005	1	0	01/03/2005
246	다이옥신에 의한 동물 유래 제품 수입제한	EU		중국	28/02/2007	18/10/2007	1	0	01/10/2007
251	생고기와 가금육에 병원균 불검출기준 적용	미국		중국	27/06/2007		0	-	
255	지역화 적용 및 소고기 금지	브라질		중국	27/06/2007	18/10/2007	1	0	11/11/2013
25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미국산 (미국 7개 주) 닭고기 수입금지	미국		중국	18/10/2007		0	_	
261	미국 사과(Golden Delicious, Red Delicious 품종) 수입제한조치	미국		중국	18/10/2007		0	_	
278	증류주 및 통합주류의 위생기준	멕시코	EU, 파라과이, 미국	중국	25/02/2009	21/03/2013	5	_	
279	인플루엔자 A/H1N1 관련 돼지고기 제품 수입 제한	멕시코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23/06/2009	28/10/2009	1	_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296	SPS 알림 작업 방식	EU		중국	29/06/2010		0	-	
319	중국 연어 검역 및 검사 절차	노르웨이	EU, 스위스, 미국	중국	30/06/2011	16/10/2013	7	-	
324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등록 및 감독 요건	인도	EU	중국	19/10/2011	27/03/2012	1	-	
329	식품첨가물 시험방법	인도		중국	27/03/2012		0	-	
345	프탈레이트 관련 수입조건	EU		중국	21/03/2013	27/06/2013	1	0	30/06/2016
354	일본 원전 사고 대응 수입 제한	일본	홍콩(중국), 대만	중국	27/06/2013	22/03/2017	10	-	
360	제비 둥지(swallow nests) 수입 정책	인도네 시아		중국	16/10/2013	26/03/2015	1	0	26/03/2015
363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제한	브라질		중국	16/10/2013		0	0	02/11/2017
383	중국의 소고기 대책	인도		중국	26/03/2015	16/03/2016	2	-	
389	중국 수입 체제, 생선 검역 및 검사 절차 포함	노르웨이		중국	15/07/2015	14/10/2015	1	_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 제한	EU		중국	15/07/2015	01/03/2018	8	-	
395	중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 개정 관련	파라과 이, 미국		중국	15/07/2015	18/07/2019	9	_	
405	슈말렌베르(Schmallenberg)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수입 제한	EU		중국	16/03/2016		0	-	
406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중국의 수 입제한 조치	EU, 미국		중국	16/03/2016	07/11/2019	10	_	
416	중국의 신선망고스틴 수입 금지	인도네 시아		중국	27/10/2016	02/11/2017	2	-	
460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미국		중국	18/07/2019		0	-	

주:▲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

<부록 3> 타국이 제기한 현안을 중국이 지지한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14건)

								_	
STC No.	제기 사유	제기국	현안 지지국	피제 기국	최초 제기	최후 제기	반복 제기 횟수	해결 여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날짜
102	화분에 대한 수입 제한	EU	중국	미국	01/07/2001	19/10/2011	6	-	
134	동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몰도바	중국	Roma nia	01/06/2002		0	0	16/10/2013
144	과일 및 과일 주스 수입 제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국,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우루과이	EU	01/11/2002	01/06/2003	2	0	11/11/2013
	비식용 용도의 동물 부산물 관련 수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 관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01/04/2003	01/06/2004	4	_	
167	꿀 수입금지	미국	중국, 멕시코	EU	01/06/2003		0	0	
183	ISPM 15 구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01/10/2003	01/03/2004	1	•	16/10/2013
185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가금육 수입제 한 조치	EU,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인도	01/03/2004	19/10/2011	16	-	
199	목재 포장재 규제 관련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도미 니카 공화국, 자메 이카, 멕시코, 필리핀	EU, 스페인	01/10/2004	01/10/2005	3	0	16/10/2013
231	계피 제한	스리랑카	중국	EU	01/10/2005	01/10/2006	1	0	01/10/2006
238	유럽 의회와 참신한 식품 위원회 규정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Novel Foods)		아르헨티나, 베냉, 볼리비아, 칠레, 중국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 라스, 인도, 멕시코, 니카라과,파라과이, 필리핀, 우루과이, 볼리비리안	EU	01/03/2006	22/03/2017	22	-	
	농약 최대 잔류물 수준(MRL)	브라질, 에콰도르	중국	일본	23/06/2009	19/10/2011	4	•	11/11/2013
300	EC 규정 번호 1099/2009	인도	중국, 베트남	EU	29/06/2010	30/06/2011	3	-	
354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일본	홍콩(중국), 대만	중국	27/06/2013	22/03/2017	10	-	
454	MRLs 및 국제 협의를 위한 EU 과도기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터키, 미국	EU	21/03/2019	18/07/2019	1	_	

주:▲는 부분해결, ○는 해결, -는 미보고를 의미함.

자료: WTO SPS IMS (출처: http://spsims.wto.org/ 최종 검색일: 2020. 7. 11.)